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6

제출년월일 : '95. 2. 1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미지정으로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가 비효율적임
- 이에따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관직을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본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시행 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킴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제110조(기금의 운용)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사회산업국장
2. 분 입 징 수 관 : 사회과장
3. 경 리 관 : 총무국장
4. 분 입 경 리 관 : 재무과장
5. 지 출 원 : 경리계장
6. 수입금 출납원 : 사회계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u>(신설)</u>	<u>제9조의 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영세민생 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 정한다.</u> <u>1. 정 수 관: 사회산업국장</u> <u>2. 분 임 정 수 관: 사회과장</u> <u>3. 경 리 관: 총무국장</u> <u>4. 분 임 경 리 관: 재무과장</u> <u>5. 지 출 원: 경리계장</u> <u>6. 수입금 출납원: 사회계장</u>